

〈별지 제2호〉

투자자성향 분류

▶ 회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적합성 판단 기준을 감안하여 투자자성향 분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성향을 점수화 방식으로 판단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정보의 항목별 배점기준 및 배점결과에 따른 투자자성향 분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정보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

구 분	성 향	점 수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26점 이상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21점 이상 ~ 25점 이하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16점 이상 ~ 20점 이하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 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11점 이상 ~ 15점 이하
안 정 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10점 이하

<별지 제3호>

적합성 판단 기준

- ▶ 투자성향 점수화(Scoring) 방식: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통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함
 -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원칙을 적용함

□ 투자자 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

1. 문항별 배점

◆ 1번 [소득상태]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3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5점

◆ 2번 [투자자금의 비중]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3번 [투자경험] 중복응답인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상품종류 3-1로 응답한 경우 6점

- 상품종류 3-2로 응답한 경우 3점

- 상품종류 3-3로 응답한 경우 1점

- 투자 경험: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3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5점

-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0점

◆ 4번 [투자성향]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3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5점

◆ 5번 [손실 감내도]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3점 ③로 응답한 경우 4점 ④로 응답한 경우 5점

◆ 6번 [금융상품 지식수준]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 7번 [파생상품 투자경험]

본 항목은 일반 투자성향 scoring 에 포함되지 않음

2. 점수 계산 방법

◆ 1번부터 7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35점)

3. 투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 10점 이하: 안정형
- 11점 이상~ 15점 이하: 안정추구형
- 16점 이상~ 20점 이하: 위험중립형
- 21점 이상~ 25점 이하: 적극투자형
- 26점 이상: 공격투자형

□ 투자자 성향별 투자권유 가능 상품 분류기준

구분	고객분류
4등급(원금보장형)	만 65세 이상 투자경험 1년 미만 - 파생상품 등 권유 불가
3등급(원금부분보장형)	만 65세 미만 & 투자경험 1년 미만 / 만 65세 이상 투자경험 1년 이상~3년 미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2등급(원금비보장형)	기타 일반투자자

	- 장외 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 등
--	-------------------------

〈별지 제4호〉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 ▶ 회사는 회사의 내부정책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손익구조, 시장상황 등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위험등급과 각 등급에 포함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상세내역을 정함

□ 위험도 측정 및 조정 시 참고할만한 정량적/정성적 요소

	구 분	설 명
정량적 요소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환율변동위험 포함)	과거 3년간의 역사적 자료를 이용하며 표준편차, VaR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를 참고 할 수 있음
	원금손실가능 정도	만기일까지의 투자원금 보장 정도로 100% 보장형과 부분보장형, 비보장형 등으로 구분
	신용등급	발행자가 국내일 경우 채권평가사에서 부여한 신용등급을 참고하고, 해외의 경우 해외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및 국가신용등급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별 신용평가 업무 수준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참작 가능
	잔존만기	채권의 경우 수정듀레이션을 고려하며 클수록 위험도를 높게 측정
	파생상품의 편입비율	파생상품의 편입정도가 높을수록 위험도를 높게 측정
	위험조정 성과척도	정보비율(IR), 벤치마크 민감도, 트레이킹 에러, 켄센의 알파, 샤프지수, 트레이너 지수 등
정성적 요소	상품의 구조	상품의 구조가 단순하거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조정
	거래상대방 위험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조정

수익률 계산 명료성	수익률 산정방법이 복잡할수록 위험도를 높게 조정
이해의 난이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일수록 높은 위험도로 조정
구조화된 상품에 대한 특정위험	만기 이전 조기상환 가능성 여부 등 감안
유동성 요소	펀드의 유동성이 낮을수록 위험도를 높게 조정
펀드 형태	적립식 혹은 거치식인지 등을 감안

▶ 회사는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에 따라 구분한 투자자성향과 회사의 내부정책에 따라 구분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투자권유를 함

□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분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채권	민평사의 평가 등급이 없는 채권 해외채권	BB+이하의 채권	회사채 (BBB+~BBB-)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CP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이 없거나 B 이하 등급		A3- ~ A3+	A1+ ~ A2-	
RP				외화RP	국내 RP
파생결합증권	원금비보장형		원금부분지급형	원금지급형	
주식/ELW ETF/ETN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ELW, ETN, ETF, 해외주식	초고위험에 미 포 함된 국내 주식 종목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국내 선물/옵션 해외선물/옵션, FX 마진				
펀드	고위험 자산에 80% 이상 투자	고위험자산에 50%이상 투자	고위험자산에 50%미만 중위험자산에 60%이상 투자	저위험 자산에 60% 이상 투자	
※펀드상품 예시	레버리지펀드, 원금비보장형 ELF	국내외주식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채권형 펀드	단기 국공채 펀드

※ 위 기준은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위 기준을 참조하여 금융투자상품 분류를 세분화 하거나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추가 분류 가능

<별지 제5호>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개인고객용]

- ▶ 당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고객님의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고객님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고객님의 기명날인(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 내용을 고객님의 지체 없이 제공하며, 당사가 파악한 고객님의 정보는 적정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데 활용합니다.
- ▶ 또한 고객님이 회사의 권유 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고객님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당사는 고객님의 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고객님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최대한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잘못된거나 불성실한 답변은 당사가 고객님의 적정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께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 일반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이 위험회피인 경우로 한정됨

2.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1년미만(경험 없음) <input type="checkbox"/>	1년이상 ~ 3년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이상 <input type="checkbox"/>
--------------------------------------	--------------------------------------	-------------------------------

3.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input type="checkbox"/>	이자율 <input type="checkbox"/>	상품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	-----------------------------	-----------------------------

* 환헤지 거래인 경우에는 기초자산 종류는 통화임.

4. 고객님의께서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5. 고객님의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고객님의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6.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회피 기초자산 (종목명/거래종류)	표시통화	수량	기타사항
EX) 롯데쇼핑CB	USD	200,000	

7. 고객님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종류	경험유무	건 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FX Forward)	EX) O	1	1년	\$200,000
FX 스왑(FX Swap)/통화스왑(Currency Swap)				
구조화 통화 옵션(Exotic FX Option): KIKO 등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상품 파생(Commodity Derivatives)				
기타 유형 :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투자자 확인

▶ 본인은 위와 같이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작성일자 : 20____년 ____월 ____일

고객명 _____ (서명/인)

신한카드 확인

▶ 이 확인서 내용은 신한카드가 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신한카드 _____ 지점 (담당자) _____ (서명/인)

〈별지 제6호〉

적합성 판단 기준(장외파생상품)

구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개인	만 70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 70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 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 상장 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

※ '경고'위험도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 장외파생상품의 분류

I 단계	II 단계	III 단계
주의	경고	위험
- 이자율 스왑 - 옵션매수	- 통화 스왑 - 선도거래	- 기타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위험 정도에 따라 I, II, III 단계로 분류함.

<별지 제7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

제 1조 (목적)

이 보호기준은 상대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에 취약할 수 있는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고령투자자의 정의)

- ① 당사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만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 ②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한다.
- ③ 계좌명의인이 고령이 아니면서 대리인이 고령인 경우와 계좌명의인이 고령이면서 대리인이 고령이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제 3조 (본사 전담부서 및 전담창구 지정)

- ①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총괄하는 본사 내 전담부서는 고객보호팀으로 하되, 세부 추진은 개별 운영부서가 담당한다.
- ②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영업점포와 콜센터에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 ③ 고령투자자가 신규로 내점하는 경우 가급적 해당 창구를 이용하도록 먼저 안내하여야 하나, 고객이 특정 직원과 상담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나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창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 4조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 ① 당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가. 일반적으로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구조화증권 등을 들 수 있다. (※투자권유 유의상품 예시 : ELF, ELT, 레버리지 펀드와 같은 파생상품, 특별자산펀드 등)

나. 일반적으로 거래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되어 빈번히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더라도 상품이 널리 주지되어 있고 시시각각 가격변동에 따른 거래의 필요성도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상장된 상품도 빈번히 거래되지 않는 상품(예: 상장된 깊은 외가격 옵션, 구조화 증권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②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신상품 개발 또는 상품 선정 시,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며, 고령투자자에 관한 위험요인을 추가 점검하며,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한다.

제 5조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 확인)

- ①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상품 가입 전에 관리직 직원(영업점장, 준법감시담당자 등)은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와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상담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④ 관리직 직원의 사전 상담 시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투자자 정보 변경여부(ex. 근황 문의)
 - 투자자금의 성격(ex. 생계자금 해당여부)
 -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ex. 부적합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변경 여부)

-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여부(손실가능성, 상품의 기본적 구조 이해 여부)
 - 사리분별능력의 현저한 변화 유무(ex. 말투, 기억수준 등 고려)
- ⑤ 관리직 직원이 자주 접촉하여, 고객의 건강상태, 투자상황(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반복적 투자)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확인절차의 완화가 적용 가능하다.

제 6조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7조 (내부통제 강화)

- ① 당사는 고령투자자 응대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담은 내규를 제정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②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 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고령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한 경우 가입금액과 상관없이 스마일 콜을 통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8조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 ① 임직원은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다.
-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여야 하며, 아래 가~다 항을 안내한다.

가.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족 등 조력자와 함께 방문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숙려기간(1일 이상)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

투자자 확인서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또는 부적정 파생상품 등 거래 확인

<<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또는 부적정 파생상품 등 거래 확인 >>

1. 계좌 및 상품정보

계좌번호				성명			
상품명							
투자자 성향	일반			투자 상품	위험등급		
	파생				파생상품 적용여부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성향	일반	공격투자형 [1등급]		적극투자형 [2등급]	위험중립형 [3등급]	안정추구형 [4등급]	안정형 [5등급]
	파생	원금비보장형 [2등급]			원금부분보장형 [3등급]	원금보장형 [4등급]	
금융투자 상품 위험등급	펀드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이하 상품	다소높은위험 [3등급]이하 상품	보통위험 [4등급]이하 상품	낮은위험 [5등급]이하 상품	매우낮은위험 [6등급]
	펀드 외	초고위험 [1등급]이하상품		고위험 [2등급]이하 상품	중위험 [3등급]이하 상품	저위험 [4등급]이하 상품	초저위험 [5등급]

※ 파생상품이 적용(편입)된 경우 일반투자성향과 파생투자성향에 모두 부합하는 상품이 적합한 상품임

■ 투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 됩니다.

■ 특히,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인 성명 : _____ 인(서명)

대리인 성명 : _____ 인(서명)